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04월 09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21년 04월 19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6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1년 04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안전교통과장)

가.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조례상 기금의 용도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상 용어와 동일하게 변경(조례안 제3조, 제4조)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기금의 용도 정비(조례안 제7조)
- 자치법규(평창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사항 반영(조례안 제9조)
- 회계공무원 지정 확대(조례안 제10조)
- 조직개편 반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구성 정비(조례안 제12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임기 당연직과 위촉직 구분 반영(조례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현진)

○ 본 조례안은

20년 1월 시행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 개정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한 것으로 자율성을 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관리 활동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예외를 두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민간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기금 운용 회계공무원의 지정범위를 기존 본청에서 제1관서까지 확대하여 재난 상황에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내용을 따른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정 적립액”을 “최저적립액”으로, “장기예치기금액”을 “의무예치금액”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 · 관리)”를 “(의무예치금액의 예치 ·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장기예치기금액”을 “의무예치금액”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평창군이 수행하는 모든 공공 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다만,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예상계상 신청 없이 교부 받은 국고보조금(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교부 한 보조금,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교부한 보조금 등)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은 사용이 가능하다.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평창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역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9조제2항 중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평창군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 규칙」”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운용관**”을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본청

가.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나.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팀장

2. 제1관서

가. 분임기금운용관 : 소관부서의 장

나. 기금출납원 : 재무·지출 회계업무팀장

제1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제2항 중 “재난업무 담당과장”을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평창군 소속 실·과·소장 중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재난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회장을 포함한**”을 “**당연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과 「은행법」 제5조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

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할 위험
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
하여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의 재난예방
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
· 보강

나.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비축

다.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
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 보수·보
강

라.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마.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

--.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령」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
령 등에 따라 평창군이 수행
하는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은 제외 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
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
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
방비 부담분. 다만, 「보조
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예상계상 신
청 없이 교부 받은 국고보
조금(재해발생 등 예측하
지 못한 사유로 교부한 보
조금, 기획재정부장관이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과 장비 등의 사
용

바.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
동사업

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
전장구 등의 구입 및 안전
시설의 설치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예보·경보시설 설
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
강

3. 재난피해시설(평창군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
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
급한 조치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
의 응급복구 및 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 확보 및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
입 및 장비의 임차. 다만,
제설용 차량구입은 제외한
다.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교
부한 보조금 등)에 대한 지
방비 부담분은 사용이 가
능하다.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
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
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
는 비용은 제외한다.

2. 평창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
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
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

<p><u>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u></p> <p><u>5.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u></p> <p><u>6.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갑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u></p> <p><u>7. 그 밖에 재난과 관련된 사항 중 제11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u></p> <p>제9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생략)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p> <p>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p> <p>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p> <p>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p>	<p><u>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u></p> <p><u>나.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u></p> <p>제9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평창군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 규칙」----- -----.</p> <p>제10조(회계공무원) ① ----- ----- ----- -----.</p> <p>1. 본청 가.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나.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2. 제1관서</p>
---	--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후단 신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평창군 소속 실·과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

가. 분임기금운용관 : 소관부서의 장

나. 기금출납원 : 재무·지출회계업무팀장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

-----.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담당국장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평창군 소속 실·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④ (생략)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과·소장 중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재난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

-----.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